

2000. 11. 24.
제101회 임시회

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안
검 토 보 고 서

사 회 도 시 위 원 회
(전문위원 박 화 순)

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안

I.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

- 세입분야는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·시비보조금과 일부 증감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,
- 세출분야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실업대책비와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진료비, 그리고 추가로 발생한 필수경상비 및 당면현안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.

II.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

1. 세입·세출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제2회 추경 예산안	기정 예산액	증 (△) 감	비 율
계	88,015,053	82,513,964	5,501,089	6.67%
일 반 회 계	79,643,870	74,812,781	4,831,089	6.46%
특 별 회 계	8,371,183	7,701,183	670,000	8.70%

2.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

1) 예산의 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제2회 추경 예산안	기정 예산액	증 (△) 감	비 율
계	43,517,209	41,311,146	2,206,063	5.34%
일 반 회 계	35,146,026	33,609,963	1,536,063	4.57%
특 별 회 계	8,371,183	7,701,183	670,000	8.70%

- 세입예산액의 증감 내역 [단위 : 천원, ()안은 증감액]

- 일반회계 ----- 35,146,026 (1,536,063)
 - 세 외 수 입 ----- 10,415,379 (△264,151)
 - 지방교부세 ----- 825,000 (800,000)
 - 조정교부금 ----- 970,000 (480,000)
 - 보 조 금 ----- 22,935,647 (520,214)
- 특별회계 ----- 8,371,183 (670,000)
 - 세 외 수 입 ----- 2,572,836 (0)
 - 보 조 금 ----- 5,798,347 (670,000)

2) 부서별 세입예산액 내역

-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제2회 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(△)감	비 율
계		35,146,026	33,609,963	1,536,063	
사 회 산 업 국	소 계	28,144,109	27,385,265	758,844	
	사회복지과	15,874,299	15,720,197	△154,102	
	환경관리과	207,737	192,737	15,000	
	청소위생과	8,146,271	8,146,116	155	
	경 제 과	3,910,702	3,326,215	584,487	
도 시 국	소 계	7,007,017	6,224,698	782,319	
	도시개발과	767,710	824,348	△56,638	
	교 통 과	712,830	709,480	3,350	
	건 설 과	4,601,399	3,795,036	806,363	
	건 축 과	90,597	80,877	9,720	
	지 적 과	834,481	814,957	19,524	

- 특별회계(세입예산+세출예산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제2회 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(△)감	비 율
계	8,371,183	7,701,183	670,000	
사 회 복 지 과 (의료보호기금)	5,809,190	5,139,190	670,000	
청 소 행 정 과 (폐기물종합처리센터)	102,543	102,543	0	
교 통 과 (주 차 장)	2,459,450	2,459,450	0	

3.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

1) 예산의 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제2회 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(△)감	비 율
계	54,671,624	51,787,651	2,883,973	
일 반 회 계	46,300,441	44,086,468	2,213,973	
특 별 회 계	8,371,183	7,701,183	670,000	

2)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(일반회계)

(단위 : 천원)

부 서 별		제2회 추경예산안	기정예산액	증(△)감	비 율
계		46,300,441	44,086,468	2,213,973	
사회산업국	소 계	34,985,164	34,077,219	907,945	
	사회복지과	18,827,757	18,645,157	182,600	
	환경관리과	102,377	72,377	30,000	
	청소위생과	10,563,396	10,539,838	23,558	
	경제과	5,491,634	4,819,847	671,787	
도시국	소 계	11,315,277	10,009,249	1,306,028	
	도시개발과	1,814,212	1,885,181	△70,969	
	교통과	132,659	127,809	4,850	
	건설과	7,895,389	6,674,260	1,221,129	
	건축과	800,262	649,244	151,018	
	지적과	672,755	672,755	0	

3) 세항별 세출예산안 내역 (일반회계 + 특별회계)

(단위 : 천원)

세 항 별	제2회 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(△)감	비 고
계	54,671,624	51,787,651	2,883,973	
사회복지	9,822,681	9,991,163	△168,482	
재활복지	684,718	703,066	△18,348	
노인복지	5,093,297	4,748,147	345,150	
부녀아동복지	3,227,061	3,202,781	24,280	
환경관리	102,377	72,377	30,000	
청소위생관리	10,563,396	10,539,838	23,558	
농축정관리	1,047,226	849,239	197,987	
지역경제관리	4,444,408	3,970,608	473,800	
도시개발	633,553	703,553	△70,000	
공원녹지관리	892,689	893,658	△969	
교통관리	132,659	127,809	4,850	
건설행정	1,948,183	1,948,183	0	
도로관리	4,460,100	3,340,100	1,120,000	
재난관리	134,758	134,758	0	
하수도관리	1,283,436	1,213,719	69,717	
시설관리	677,193	538,325	138,868	
건축관리	44,366	32,216	12,150	
재산관리	218,804	218,804	0	
지적관리	453,951	453,951	0	
제지출금 및 지방채상환	435,585	404,173	31,412	
특별회계	8,371,183	7,701,183	670,000	

III. 검토의견

○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·시비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감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실업대책비와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진료비와 그동안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및 당면현안사업비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입니다.

-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

기정예산액 41,311,146천원보다 2,206,063천원이 증액된 43,517,209천원으로

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3,609,963천원보다 1,536,063천원이 증액된 35,146,026천원이며,

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7,701,183천원보다 670,000천원이 증액된 8,371,183천원 편성

◎ 일반회계

《세입예산》

○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,609,963천원보다 1,536,063천원이 증액된 35,146,026천원으로

- 주요내용으로는

- 세외수입의 경우 도로무단점용변상금이 452,834천원 감액된 반면 시민공원시설사용료 수입,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184,238천원이 증액되었으며, 지방교부세는 800,000천원 증액

- 농로확·포장사업비 및 도로개설사업비 등 재원조정특별교부금 480,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

- 국·시비보조금은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비 및 저소득 취로사업비 등 82,844천원이 감액된 반면, 공공근로사업비와 도심철도 이설구간 경로당확충 사업비 등 350,793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.

《세출예산》

○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4,086,468천원보다 2,213,973천원이 증액 계상된 46,300,441천원으로

-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

- 저소득층 취로사업 인부임으로 148,200천원 감액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·주거급여비 102,678천원 감액

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18,34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

- 도심철도 및 탄약고 이설구간 경로당 확충사업비 210,000천원과

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로 23,850천원,

공공근로사업 인건비 512,7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

- 월드컵경기장인근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비 1,094,500천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
- 광천동 주거환경사업비 70,000천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.

◎ 특별회계

○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,701,183천원보다 670,000천원 증액된 8,371,183천원으로 국·시비보조금 670,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.

○ 금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

- 국·시비 보조금 사업비 변동에 따른 정리 및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 및 도시 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투자한 사업비가 대부분으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 등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
- 국·시비보조금의 감액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.

예를 들면,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·주거급여 등은 국·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되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·시비보조금 등 자원 확보에 노력이 요구됩니다.

- 경제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직가정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는 생계보호와 지역경제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 및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.

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심의에 있어서는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된 국·시비보조금의 이유와 반환금 계상의 사유 등에 관한 명확한 제시를 통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.

그리고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시기 적절한 사업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바, 특히 국·시비보조에 의한 도로나 농로확·포장 공사, 시설개보수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흑한기를 피하여 부실공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강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.